

# 충청북도교육청공공기관이용에관한조례증개정조례안

## 심사 보고서

### 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: 2003. 5. 12(충청북도교육감)

나. 회부일자 : 2003. 5. 12

다. 상정일자 : 2003. 5. 23 제2차교육사회위원회에 상정 의결

### 2. 제안설명(교육국장 반창남)

가.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

- 충청남도 보령시 신혹동 2218-1번지에 '97년부터 공사를 시작하여 금년 7월 1일 개원하는 "임해수련원"의 운영관리 업무 등을
- 진천군 문백면에 소재하고 있는 충청북도학생종합야영장으로 이관하고, 아울러 동 조례의 내용 중 야영장 및 장장 등의 명칭을 "수련원 및 원장" 등으로 수정하여 변경하는 것 등입니다.

### 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임석규)

- 동 조례는 지난 '97년부터 공사를 발주하여 갖은 우여곡절 끝에 금년 7월 1일에 개원하고자 하는 임해수련원의 운영 관리업무를 충청북도학생종합야영장에 이관하여
- 도내 단위학교 초·중·고 학생 1만 7천명들이 수련활동을 통해 개척정신과 호연지기를 고취시켜 전취적이고 적극적인 청소년의 육성 및 실천적 인성교육의 함양을 위한 것으로 타당하게 개정한 것으로 사료 됨.

- 다만, 동 수련원 개원이후 운영관리에 따른 정원 및 인건비 확보 대책과 수련원생들의 수련활동시 부상 및 의사 그리고 수련원의 건물화재 등 안전사고 대책에 대하여는 철저한 대비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 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9. 첨부서류

- 충청북도교육청공공기관이용에관한조례증개정조례안 1부.

## 충청북도교육청공공기관이용에관한조례증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01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03. 04. 14.

제출자 : 충청북도교육감

### □ 개정이유

- 충청북도의 학생들에게 임해수련활동을 통한 정서 순화와 진취적 기상을 신장시키기 위하여 충청남도 보령시 신혹동 2218-1번지에 임해수련시설을 신축함에 따라,
- 이에 대한 운영관리 업무를 충청북도학생종합야영장에 통합시키고 그 명칭을 충청북도학생종합수련원으로 변경함에 따라 학생종합야영장에 관한 규정을 학생종합수련원에 동일하게 적용하려는 것임.

### □ 주요골자

- “충청북도학생종합야영장” 을 “충청북도학생종합수련원”으로 명칭 변경 (안 제2조).
- 학생야영장의 이용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학생종합수련원에 동일하게 적용 (안 제6장).

### □ 개정 조례안 : 복 험

### □ 참고사항

- 신·구조문 대비표
- 기 타 : 입법예고(03. 04. 04 ~ 04. 13)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.

## 충청북도교육청공공기관이용에관한조례증개정조례안

충청북도교육청공공기관이용에관한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증 “충청북도학생종합야영장 및 지역교육청 소속 학생야영장 (이하 “야영장”이라 한다)”을 “충청북도학생종합수련원 및 지역교육청 소속 학생야영장 (이하 “수련원 및 야영장”이라 한다)”으로 한다.

제6장의 제목 “야영장”을 “수련원 및 야영장”으로 한다.

제30조 및 제32조증 “야영장”을 각각 “수련원 및 야영장”으로 하고, “장장”을 각각 “원장 및 장장”으로 한다.

제3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31조(개원·개장시기 및 시간) 수련원 및 야영장의 개원·개장시기 및 시간은 원장 및 장장이 정한다.

제33조제1항증 “야영장”을 “수련원 및 야영장”으로 하고, 동조 제2항증 “장장”을 “원장 및 장장”으로 한다.

제34조증 “장장”을 “원장 및 장장”으로 하고, 동조 제1호의 “야영”을 “수련 및 야영”으로, 제3호의 “장장”을 “원장 및 장장”으로 한다.

제36조증 “야영장”을 “수련원 및 야영장”으로 한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

##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3조(사용료 징수) ① <u>약영장</u> 이용자의 숙식비 및 시설사용료는 실비로 징수 할 수 있다.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징수 액은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<u>장장이</u> 정한다.	제33조(사용료 징수) ① <u>수련원 및 약영장</u> . . . . . ② . . . . . <u>원장 및 장장</u> . . . . .
제34조(이용제한) <u>장장</u> 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이용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이용을 정지시킬 수 있다. 1. <u>약영질서를 해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</u> 2. (생 략) 3. <u>장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</u>	제34조(이용제한) <u>원장 및 장장</u> . . . . . 1. <u>수련 및 약영</u> . . . . . 2. (현행과 같음) 3. <u>원장 및 장장</u> . . . . .
제35조(이용자의 책임)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<u>약영장</u> 의 시설물이나 물품을 훼손·분실하므로써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용자가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.	제35조(이용자의 책임) . . . . . . . . . . <u>수련원 및 약영장</u> . . . . .
제36(제정) <u>약영장</u>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에 계상한다.	제36(제정) <u>수련원 및 약영장</u> . . . . .